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도입 등〉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60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법의 목적에 피해지원 추가	3
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세부유형 추가	6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벌점 및 교육명령, 과징금 도입 ..	9
4. 제척기간	17
5. 피해회복 지원	21
V . 참고자료	2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재관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5.
3. 회부연월일 : 2026. 3. 6.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시정권고, 분쟁조정·중재, 기술보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적 대응 수단은 시정권고에 한정되어 있어 침해행위에 대한 억지력과 실효적 권리구제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법의 목적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보완하는 한편, 시정 명령·벌점·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 단계적인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

고 피해 입증 및 회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법의 목적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명시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1조).
- 나.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을 사용·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추가함(안 제2조 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 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정비함(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 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교육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의6부터 제8조의8까지 신설).
- 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IV. 검토의견

1. 법의 목적에 피해지원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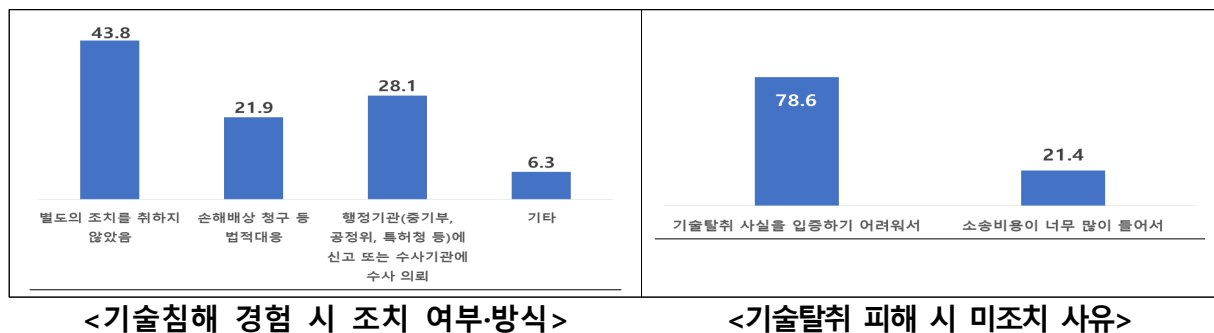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확충 및 관련 시책 수립·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보호 기반을 확립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서 중소기업기술보호 및 피해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중소기업기술의 침해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보호 기반을 확립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u>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¹⁾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 건수는 한해 299건으로, 평균 손실액은 1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1) 중소벤처기업부(2025.3.)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재판 전문성 미흡 등으로 인해 승소율이 낮고²⁾ 소송 기간이 길며³⁾, 승소 시에도 손해액 인정률⁴⁾이 낮아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기술침해 피해 발생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이 43.8%('23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역량 강화 실태조사, 보호지침 마련, 전문인력 양성 및 보안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예방적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를 위해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공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 간 합의에 기반한 분쟁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술보호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소

2) 최근 5년간('18~'22) 기술분쟁 사건 승소율(25.6%)은 전체 민사사건 승소율(55.6%)의 약 2분의 1 수준(출처: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3) 판결(1심 기준)까지 1년이상 소요 기간: 민사 94.6%, 형사 77.5% (출처: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4) 민사사건 승소사건 중 법원의 손해배상 인용액은 청구액 대비 17.5%인 1.4억원 수준 (출처: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바, 개정안은 현행법의 지원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벌점, 과징금 등 실효적 행정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손해액 산정 등 피해 회복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 피해 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의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고, 중소기업 기술침해 예방 및 보호, 회복지원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참고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법률의 목적을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에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⁵⁾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제2215533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제2216367호)

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세부유형 추가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①정당한 권한없이 취득한 침해 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제3자에 제공하거나, ②비밀유지계약(NDA⁶⁾) 등을 통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그 기술을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침해 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u> <u>마. 계약, 거래, 고용 등의 관계에 따라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하면서 그 기술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그 기술을 사용·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u>

6) Non-Disclosure Agreement

현행법⁷⁾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세부유형으로 ①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는 행위, ②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③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을 직접 사용·공개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까지 침해유형으로 명시하여 고도화된 기술유출 수법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계약·거래·고용 관계에서 기술을 취급하는 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에 포함함으로써 계약관계자 및 내부자 등에 의한 기술유출 및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개정안에 대해 지식재산청은 현행법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유형들이 모두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된 사항을 사실상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고 중복입법에 해당한다는 의견임⁸⁾.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을 포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틈없는 기술보호제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대상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⁹⁾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제2213221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제2215533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제2216367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제2215852호)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벌점 및 교육명령, 과징금 도입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정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현행 “시정권고 및 공표” 외에 “시정명령”을 추가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점부과, 임직원에게 교육명령 및 과징금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안 제8조의6부터 제8조의8 신설).

[illegible]

현행	개정안
<u>권고</u>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피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u>권고</u>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u>권고대상이나</u>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u>권고</u> 및 공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u>권고</u>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u>들</u>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u>권고</u>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u>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u>을-----. ③ ----- -----<u>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u>을-----<u>권고 또는 명령의 대상이나</u>-----. ④ -----<u>시정권고, 시정명령</u>-----. 제8조의4(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 -----<u>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u>을----- ----- ----- -----<u>들어야 한다.</u> ② ----- -----<u>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u>을----- ----- ----- -----. 제8조의6(벌점의 부과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침해행위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8조의3에 따른 <u>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u>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가 침해행위

현행	개정안
<신 설>	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의7(교육명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6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법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신 설>	제8조의8(과징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내용, 피해 규모 및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

현행	개정안
	<u>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u> <u>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u> <u>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u> <u>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u> <u>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 <u>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1. 당기순손실</u> <u>2. 부채비율</u> <u>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⑤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u>

이는 목적규정 개정의 취지와 같이 현행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으로 변경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비강제적인 “시정권고”에 더해 강제력을 갖춘 “시정명령”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여함으로써 기술침해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벌점부과를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자의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단계별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침해행위에 대한 상시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기술침해로 얻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벌점 및 과징금 부과는 현행 법 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법률이 규율하는 하도급거래 및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 등의 행위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는 서로 중복될 수 있으므로, 법률간의 적용 선후관계 등을 명확히 하여 중복규제로 인한 사업자 부담 및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 유사 행정제재 현황

구분	개정안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시정명령	- 중소기업부장관의 행정조사 결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 아래 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기술제공요구에 대한 서면발급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 ·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 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아래 행위 등에 대한 중소기업부장관의 주기적 조사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기업부장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벌점부과 및 제재조치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 부과 -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	- 위의 시정명령 대상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 부과 - 입참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의 조치	- 위의 시정명령 대상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

구분	개정안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과징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내용, 피해 규모 및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시정명령 대상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해당없음

자료: 개정안 및 현행 법률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 사건의 핵심은 신속한 “기술 판단”과 “증거 확보”에 있으며, 기술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조사는 오판의 위험이 크고,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행정조사는 영장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수사 절차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탈취 등을 규율하는 「하도급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해 「하도급법」의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하도급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억제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하도급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간 우선적용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¹⁰⁾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제2213221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제2215533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제2216367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제2216330호)

4. 제척기간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명령, 벌점부과, 교육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9(제척기간)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8조의3, 제8조의6부터 제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는 행정제재 권한의 무기한 행사를 방지하여 피신청인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장기간 경과시 증거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불분명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유사한 입법례로 「상생협력법」에서는 중소기업부장관의 조사개시 대상 또는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수탁·위탁거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소기업부장관이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를 개

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개선요구(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하도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 거래의 기술자료 침해행위를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①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②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¹²⁾.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척기간) ① 제27조제1항·제4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개시 대상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수탁·위탁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수탁·위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 요청을 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용 검토를 위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같은 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수탁기업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준수사항)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표 2] 기술침해 관련 유사 제척기간 현황

구분	개정안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제척기간	7년	7년 또는 3년	7년 또는 3년
기산점	침해행위 종료일	거래종료일(7년) 또는 신고일·조사개시일(3년)	거래종료일(7년) 또는 조사개시일(3년)

자료: 개정안 및 현행 법률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의 제척기간은 침해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7년을 설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사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제척기간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날부터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파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부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부터 3년

개정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중소기업기
술 침해행위 행정조사의 행정력 낭비 및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일정 시
간 경과 이후의 사건에 대한 행정부 책임추궁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5. 피해회복 지원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입증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액 산정, 법률 상담 및 전문가 자문, 기술 감정 및 분석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피해 회복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입증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¹³⁾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업무 지원 2. 침해 사실의 입증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전문가 자문 등 법률 지원 3.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과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또는 기술 간의 유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 및 분석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또는 회복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현행	개정안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8조의8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 소송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피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액 산정에 관한 업무,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또는 기술 간의 유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 및 분석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침해 소송에서 정부가 전문기관을 활용한 손해액 산정과 침해 기술의 유사성 감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정보·비용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을 피해기업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동하지 않는 예산총계주의¹⁴⁾ 원칙을 고려할 때 해당 과징금을 별도의 기금 재원으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등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및 법률 대응 등 구제를 위한 지원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7

14)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 1. 1.>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V. 참고자료

1	법률에 따른 기술보호 대상 및 제재
----------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소관	중기부	지재처	중기부	공정위
침해행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기술자료 제공요구,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기술자료 제공요구,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당사자간 계약관계 필요성	X	X	수·위탁계약	하도급계약
비공지성	○	○	X	X
비밀관리성	○	○	○	○
경제적유용성	○	○	○	○
행정적 제재	• 행정조사 대상 • 조사불응 시 과태료 • 시정권고·공표	X	• 행정조사 대상 • 시정권고·명령 • 공표 • 공정위 조치요구 • 조사불응 시 과태료	• 행정조사 대상 • 조사불응 시 과태료 • 시정명령·공표 • 과징금 • 전속고발
민사적 구제	X	• 손해배상(최대 5배)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손해배상(최대 5배) •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	• 손해배상(최대 5배) • 금지청구권(입법 중)
형사적 제재	X	• 침해행위 시 15억원 이하 벌금 또는 15년 이하 징역	• 시정명령 불응 시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시정명령 불응 시 1.5억원 이하 벌금 • 침해행위 시 하도급 금액의 최대 2배 벌금
법적성격	지원법	제재법	제재법	제재법

2

부처별 기술탈취 사건 처리 절차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하도급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부경법 (영업비밀)	산업기술 보호법
소관부처	공정위	중기부	중기부	지재처	지재처	산업부
구제대상	기술자료	침해대상 중소기업 기술	기술자료	특허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기술보호 대상요건	· 비밀관리성 · 경제성	· 비공지성 · 비밀관리성 · 경제성	· 비밀관리성 · 경제성	· 등록 특허	· 비공지성 · 비밀관리성 · 경제성	· 고시된 기술 (산업부고시)
조사권한 및 방법	신고→ 행정조사	신고→ 행정조사	신고→ 행정조사	신고→ 수사(특사경)	신고→ 수사(특사경)	수사연계 (국정원)
행정조치 (조사관)	자료제출 명령 출석요구 등 ↓ 과태료(거부 시)	시정권고 ↓ 공표(미이행시)	시정명령 ↓ 벌칙	X	X	X
	과징금	자료제출 명령 ↓ 과태료(거부 시)				
	시정명령 ↓ 벌칙					
과태료	최대 2억 (자료제출· 조사거부 등)	최대 1천만원 (자료제출 거부)	최대 1천만원 (NDA 위무 위반)	X	X	X
과징금	○ (법위반행위 ↓ 하도급대금 최대 2배)	X	X	X	X	X
벌칙	· 하도급 대금 2배 이내 (기술자료 유용) · 최대 1.5억원 (명령 불이행시)	X	명령 불이행 시 · 최대 5천만원 · 최대 1년	· 최대 1억 · 최대 7년	①국외 유출 · 15억/15년 ②국내 유출 · 5억/10억 ③물건몰수	①국외 유출 · 30억/15년 ②국내 유출 · 10억/10년 ③범죄재산 몰수

3

기술탈취 행정조사 절차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